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685
-----------	------

2026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5월 26일, 이상욱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 및 각종 물품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결·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시설 공사를 중심으로 하자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물품 계약에 대한 하자 관리 기준 및 절차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하자 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시설 공사 하자 관리 대상에 물품 계약을 추가하고,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 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 분산되어 있던 하자 관리 책임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목적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도모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적용범위 등 확대

나. 물품 계약의 하자 검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물품 계약을 통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9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6일 이상욱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685호로 발의되어 2026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적용 범위에 물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하자 검사 실시 의무, 물품 계약 현황에 관한 통계관리, 안정적인 물품 계약 시행 및 체계적 하자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정책 시행 의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하자검사는 완성된 건축물·시설물이나 납품이 완료된 물품 등에 대하여 안전성, 기능성 및 품질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결함이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임.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울주군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를 4년간 8,082회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정기·최종하자검사 정상화, 계약·하자정보 관리 개선 등을 요구했고,<sup>1)</sup> 2017년 6월 한국환경공단은 산하 수도권통합서비스센터가 9건의 하자검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처분한 바가 있음.<sup>2)</sup>
- 이와 같은 하자검사 누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1항<sup>3)</sup>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공사·용역·물품 관리에 있어 하자 발견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물품 등을 내용연수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용자 안전 및 자산 운용 효율성 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1) 도남선 기자(2025.11.27.), 울주군, 4년간 8천건 하자검사·최종검사 누락 [울주군 감사 심층보도(12)], <브릿지경제>, <https://www.vival100.com/article/20251127500058> (검색일 2026-06-06)

2) 김준구 기자(2017.6.19.), 쪼개기 발주 '수의계약' 눈감은 '하자검사'... 도넘은 편법,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1365116> (검색일 2026-06-06)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분야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하자관리 실시 근거와 하자 관리를 위한 통계 작성 및 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는바, 하자관리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하자검사, 제6조에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제7조와 제8조에서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서 각각 통계관리 및 공시와 시의회 보고,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일부 조문에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시스템”으로 혼용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약칭에 대한 언급이 부재해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자치

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못함.

- 그러므로 안 제2조제4호에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조문 전반에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추가적으로 안 제8조제1항 본문이 교육감에게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의 총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1항 단서가 교육재정과장을 총괄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만”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런데 “다만”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의<sup>4)</sup> 의미를 가진 부사로서 본문에 규정된 내용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임.
  - 즉, 단서의 내용이 본문에 적시된 사항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음에도 조례안은 “다만”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안 제8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이는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조례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검토(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시설공사 하자검사에서 물품 하자검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명,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제2항), 적용범위(안 제4조) 등 조문 전반의 내용에 “물품”을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만”,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0757&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0757&searchKeywordTo=3) (검색일 2026-06-10)

추가하고 있음.

- 물품에 대한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sup>5)</sup> 중 연 2회 이상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sup>6)</sup>에서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물품에 대한 하자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물품도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sup>7)</sup>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하자검사조서 작성이면제되어 하자이력 관리 등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품 하자검사 이력 및 후속 조치 관리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개정 조례 시행 시 시스템을 통한 이력 관리, 통계 공시 등을 통해 물품에 대한 하자 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 [표-1] 하자 검사 실시 관련 주요사항<sup>8)</sup>

나. 하자 검사  
1) 하자검사의 실시

5) 건축물이나 물품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자나 도급인 등이 상대방(매도인, 수급인 등)에게 하자보수나 손해 배상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민법」 상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 석회조 및 연화조 등으로 조성된 것은 10년, 통상적인 목적물은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임.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8)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5.11.), 「2025년 물품계약 길라잡이」, 296쪽.

- 정기하자 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 실시
    - 최종검사 완료 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실시
    - ※ 계약상대자는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이 참관해야 함. 계약상대자 참관 거부시 일방적인 검사 가능
  -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 ※ (예외)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하자검사는 해야 함
  -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2) 전문기관에 의한 하자검사
-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적용 범위에 관해 다루는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모든 물품 계약’ 으로 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일반 물품까지 포함하게 되어 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설정된 주요 물품 계약에 적용한다” 로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sup>9)</sup>

○ 그러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에서 하자검사 대상을 이미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안 제4조로 인해 현장에서 하자관리 대상 물품의 범위를 혼동하거나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업무 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

3) 물품계약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3조제2항 신설)

○ 계속해서 안 제3조제2항은 교육감에게 교육공동체에서 요구하는

9)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550, 2026.6.4.)

목적과 품질, 기능에 부합하는 물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품 계약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조문은 물품 계약의 시행과 계약에 따른 하자관리 업무 전반에서 교육감의 책임성을 높이고,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됨.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있는 물건의 하자 검사 실시에 관한 검토(안 제5조제2항 신설)

- 안 제5조제2항은 계약을 발주한 기관의 장에게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근거로 물품의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5)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검토(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 또한, 안 제8조제1항의 단서는 시설공사 및 물품관리의 하자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총괄 관리책임자로 교육재정과장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재정과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0호에<sup>10)</sup>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은 소관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하자관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sup>11)</sup> 따라 교육부가 구축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sup>12)</sup>

-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7조 제3항에<sup>13)</sup> 따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총괄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sup>14)</sup>

○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은 하자 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이 명확하지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교육행정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

11)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550, 2026.6.4.)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550, 2026.6.4.)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품 분야까지 하자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입법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안 제8조제4항 신설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집행상 보완에 그치는 것을 넘어 총괄 관리체계의 적용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한 예외를 새롭게 규정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하자관리 책임체계의 구성 방식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으로<sup>15)</sup>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6) 물품 계약 및 하자관리 통계 관리에 관한 검토(안 제9조제2항 신설)

- 안 제9조제2항은 교육감이 원활한 물품 계약 및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이 발주한 물품 계약의 종류와 품목, 내역 등을 통계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문은 K-에듀파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물품 계약 전반에 관한 정보 수집과 통계 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물품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

15) 서울특별시의회(202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 262쪽.

## VI. 수정안의 요지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약칭을 “시스템”으로 하고, 이를 조문 전반에 반영함(안 제2조제4호 등).
-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는 조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85
----------	------------

제안연월일 : 2026년 6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적시하고, 조문의 내용이 개정 취지를 명확히 드러냄과 동시에 어문규정에 합치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약칭을 “시스템”으로 하고, 이를 조문 전반에 반영함(안 제2조제4호 등).
-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는 조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이란” 을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을 “(시스템의 구축·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을 각각 “시스템” 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관리시스템” 을 “시스템” 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 를 “(시스템의 유지·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을 “시스템” 으로, “둔다” 를 “두며, 이는 교육재정과의 장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을 각각 “시스템” 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하자관리 지원시스템”</u>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u>이란 ----- ----- -----.</p>
<p>제7조(<u>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u>)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u>하자관리 지원시스템</u>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u>하자관리 지원시스템</u>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통합 이력관리</p> <p>2.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p> <p>3.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p> <p>4.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보수 후속조치 관리</p>	<p>제7조(<u>시스템의 구축·운영</u>) ① ----- ----- ----- <u>시스템</u> ----- -----.</p> <p>② <u>시스템</u> ----- -----.</p> <p>1. ----- -----</p> <p>2. ----- -----</p> <p>3. ----- -----</p> <p>4. ----- -----</p>

조 례 안	수 정 안
5.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5. ----- ----- -----
6. 그 밖에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u>하자관리 지원 시스템</u>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u>관리시스템</u> 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u>시스템</u> ----- ----- <u>시스템</u> ----- ----- -----.
제8조( <u>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u> ) ① 교육감은 <u>하자관리 지원시스템</u>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u>다만, 총괄관리책임자는 교육재정과의 장이 된다.</u>	제8조( <u>시스템의 유지·관리</u> ) ① ----- ----- <u>시스템</u> ----- ----- ----- ----- <u>두며, 이는 교육재정과의 장으로 한다. &lt;단서 삭제&gt;</u>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u>하자관리 지원 시스템</u>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u>시스템</u> ----- ----- ----- -----.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u>하자관리 지원 시스템</u>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 <u>시스템</u>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을 발주한 제4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공사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 품질, 기능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품 계약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시행과 하자관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며, 이는 교육재정과의 장이 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물품 계약 및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이 발주한 물품 계약의 종류, 품목, 내역 등을 통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의 하자 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